

## HRD훈련과정개발 운영위원회 운영 지침

제정\_2024.09.1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HRD훈련과정개발 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)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업능력개발 과정
2. 학생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
3. 국가기술자격취득 과정
4. 기타 평생교육원 HRD직업능력개발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장)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으로 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7조(회의록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HRD직업능력개발팀에서 관장한다.

제9조(시행)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